

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 개정령

기름 · 연탄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제도

경제행정규제완화 대상 과제로 건의한 기름 · 연탄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 협회 안건이 통과되어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중 개정령이 공포되었다.

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'94년2월3일 이후로는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기름 · 연탄보일러는 설치 시공 확인대상에서 제외되었다.

현 행	개 정
<p>제25조(설치 · 시공확인 대상시기)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· 시공확인을 받아야 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(이하 "확인대상기기"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· 직할시 · 도청소재지 · 인구 20만이상의 시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안의 신축 건축물에 설치 · 시공되는 온수보일러 및 구명탄용 온수보일러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매몰식의 구명탄용 온수보일러2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설치 · 시공되는 것3.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시공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설치 · 시공 하는 것.	<p>제25조(설치 · 시공확인 대상기기) 현행과 같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현행과 같음2. 현행과 같음3.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시공업자가 설치 · 시공하는것